## 인증위원 정보보호 서약서

□ 위촉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본인은 위 기간 동안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위원회 위원으로서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사실에 대한 비밀을 유출 또는 공개하지 아니할 것이며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소속 :

성명 : (서명)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업무
- 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5. 제6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 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7조(비밀유지의무) 및 제29조(벌칙)
- 다.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 라.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 마.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 바. 군사기밀 보호법 제12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